##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증



[시행 2024. 4. 30.] [여성가족부령 제203호, 2024. 4. 30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 (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) 02-2100-642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2조(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19.>
  -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0. 3. 19.>
  - 1. 성별, 나이, 학력, 혼인 상태,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  - 2. 가정폭력 발생 요인, 발생 유형,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조의2(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·관리)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 "이라 한다)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,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15.]

[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<2014. 7. 15.>]

제2조의3(긴급전화센터의 설치・운영기준)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・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

[본조신설 2009. 11. 2.] [제2조의2에서 이동 <2014. 7. 15.>]

제3조(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)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)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12., 2018. 6. 11.>

- 1. 법인의 정관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삭제 < 2014. 12. 12.>
- 4.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
- 5.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6.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7.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., 2018. 6. 11.>

-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, 소재지,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, 2020. 6. 30.>
- 1. 상담소의 명칭, 소재지,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(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)
- 2. 임대차계약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변경시설의 평면도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・처분계획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상담소 신고증
-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., 2018. 6. 11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**제4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기준 등)**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18. 6. 11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조(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<개정 2014. 12. 12., 2018. 6. 11.>
  - 1. 법인의 정관
  - 2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3.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
  - 4.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 - 5.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 - 6.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  -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., 2018. 6. 11.>
  - 1.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(입지조건, 규모, 구조 및 설비기준) 및 종사자 수
  - 2.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
  -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, 명칭,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(전자문서 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
  -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1. 보호시설의 소재지,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
  - 2. 임대차계약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3. 변경시설의 평면도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・처분계획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입소자의 조치계획서(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7. 보호시설 인가증
-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(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내용을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., 2018. 6. 11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6조(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조(보호기간의 연장)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, 11, 29, 2018, 6, 11,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8조(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, 보호기간,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18. 6. 11.>
  -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  -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1.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
  - 2.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(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신청인이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
[본조신설 2010. 11. 17.] [제목개정 2018. 6. 11.]

**제9조(종사자의 자격기준)**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10조(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(이하 "교육훈련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12., 2018. 6. 11.>
  - 1. 법인의 정관
  - 2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
- 4.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
- 5.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,, 2018. 6. 11.>
-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, 명칭,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- 1.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, 명칭,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
- 2. 임대차계약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변경시설의 평면도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・처분계획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(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교육훈련시설 신고증
-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(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내용을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1. 17., 2018. 6. 11.>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제11조(교육훈련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,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8. 6. 11.>
 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제11조의2(보수교육의 실시기준)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 · 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- 제11조의3(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)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・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8. 6. 11.> [본조신설 2014. 1. 28.]
- 제12조(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(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)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12., 2018. 6. 11., 2019. 8. 28., 2022. 8. 16.>
  - 1.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(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1의2.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(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2.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(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・처분계획서
- 4. 상담소 신고증,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(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,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)
- 5.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(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(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7.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,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8. 12., 2018. 6. 11.>
- ③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-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8. 12., 2018. 6. 11.>
- ⑤ 관할 세무서장이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6. 8. 12., 2018. 6. 11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3조(기록의 보존) 상담소・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- 1.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(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(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)
- 3. 재무・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4조 삭제 <2015. 12. 14.>

- 제15조(행정처분의 기준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·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있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・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, 업무의 정지・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,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8. 12., 2018. 6. 11.>
  - 1. 입소자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
  - 2.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
  - 3. 보조금·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
  - 4. 그 밖에 입소자・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15조의2(평가의 기준과 방법)**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시설 환경의 적정성
  - 2.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
  - 3. 사업 내용의 적정성
  - 4.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
  - 5.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,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 11. 17.]
- 제16조(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)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. <개정 2010. 3. 19.>
 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제17조(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)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(이하 "치료비용"이라 한다)을 청구할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1.>
  - 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(求償權)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1.>
  -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

## 12. 27.>

- 1.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 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
- 2.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 ·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
- 3.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

3의2. 삭제 < 2021. 4. 2.>

- 4.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,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
- 5.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
- 6. 삭제 < 2015. 12. 14.>
- 7. 삭제 < 2016. 12. 27.>
- 8.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
- 9. 삭제 < 2018. 12. 21.>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[본조신설 2014. 12. 12.]

**부칙** <제203호,2024. 4. 30.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